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2-8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21. 12. 2. 「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」가 지정됨에 따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관광특구 민간 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, 다른 조례와의 관계  
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다. 민간 협력체계 구축, 사업추진, 지원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관광특구 법적특례(안 제8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71조(관광특구의 진흥계획) 및 제74조  
(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)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5. 26. ~ 6. 15.(20일)

▶ 서울마포경찰서의 의견 제출 [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-3607(2022.6.15.)]

☞ 서울마포경찰서 주요의견

- 관광특구 지정 등 자치단체 주도의 시설(보안등 · CCTV · 도로 및 미관 개선 등) 개선 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, 관광특구 시설물 관련 계획 수립 시 마포경찰서의 범죄 통계분석 정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길 바람

☞ 마포구 의견

-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시 마포구 치안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마포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함

원안	수정안
<p>제4조(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)</p> <p>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</li> <li>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른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li> </ol>	<p>제4조(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)</p> <p>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</li> <li>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른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</li> </ol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</u></p>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

5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(2022. 6. 28.)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)**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, 동교동, 상수동, 합정동 일대이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“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”로 한다.

**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(이하 “관광특구”라 한다)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
2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9조에 따른 사항
3.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**제5조(민간 협력체계의 구축)**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육성과 서비스 개선,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**제6조(민간 협력사업의 추진)**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광특구 특화 행사 발굴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업
2.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·환경 개선 사업
3. 관광특구 내 문화예술자원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
4. 국·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
5. 그 밖에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

**제7조(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)**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 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)** ① 관광특구 안에서 영 제60조의 3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은 「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」를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6.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7조(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 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소요됨

4. 작성자 : 관광일자리국 관광과 정지현 (☎ 3153-8654)